역사는 2.11 집회를 '제2의 광복절'이라 적었다!

당신은 아이와 함께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태극기집회

촛불집회

뉴스타운 NEWSTOWN

號外6 (호외)

2017년 2월 11일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 아 10호
발행 · 편집인 : 손 상 대 / 회 장 : 손 상 윤 / 인쇄인 : 정문희
대표전화 : (02)978-4001
주 소 :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태극기 명령' 국가 전복 음모 당장 멈춰라!

정치-언론-사법-촛불세력 심각한 헌법유린 300만 태극기 나부끼는 애국물결 보여주자

단언컨대 태극기가 대한민국을 꼭 지킨다! 진실은 시간이 걸리지만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진리를 태극기 애국집회에서 몇 번째 확인과 재확인을 경험하고 있다.

지난해 12월24일부터 활화산처럼 분출된 태극기 물결은 지금 전세계를 뒤덮을 기세다. 민심을 넘어 천심이 돼버린 태극기 집회는 매주 100만 명 이상 참여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우고 있다.

그것도 제주에서 서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애국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석한다는 사실이다.

세계가 놀라고, 우리 스스로도 놀라고 있다.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국민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 역사 앞에 여실히 증명됐기 때문이다.

언론이 외면하건 말건 분명한 것은 이 역사적 드라마를 애국 국민들 스스로가 창출해냈다는 사실이다. 애국 국민들은 분명히 보았다. 정치와 언론, 사법, 촛불세력이 국가전복의 무서운 비수를 차고 있다는 것을.

애국 국민들은 두 눈으로 확인했다. 이들이 합세해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 한다는 것을. 애국 국민들은 재확인 했다.

이들이 헌법을 무시하고 무조건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 내리고 나서 무혈쿠데타로 정권을 탈취 하려 한다는 것을.

애국 국민들은 알고 있다. 촛불세력의 이 엄청난 음모를. 애국 국민들은 알고 있다. 촛불세력을 선동해 박근혜 정권을 뒤엎으려 한다는 것을.

함머니 할아버지가 분개해 일어났나. 6.25전쟁과 월남전에서 목숨 받쳐 나라 지켰던 아버지들이 태극기를 들었다. 바깥세상 모른 채 집에서 가족을 돌보던 아주머니들이 행주치마를 걷친 채 길거리로 몰려나왔다.

먹고 살기 바쁘다고 침묵하고 있었던 4~50대의 장년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음에 두주먹 불끈 쥐고 나라 살리기에 나섰다.

좌파 언론과 여론 선동에 속아 촛불집회에 발을 들였던 10대 20대 30대 청소년들이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을 외친다.

진실을 전하는 언론 하나 없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애국 국민은 오로지 나라사랑 하나 만으로 똘똘 뭉쳤다. 왜곡과 편파도 모자라 조작보도까지 일삼는 언론에 맞서 SNS하나로 진실을 알리는데 성공했다.

▲ 사진=태극기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 젊은 2030세대

무소불위의 특검과 안하무인 식 수사 때문에 공포에 질린 대한민국에 태극기는 애국의 피를 수혈했다.

3월13일 이전 결론이라는 헌재 재판소장이 전대미문의 날짜를 박은 역사적 과오에 태극기는 회초리를 들었다.

국가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배고픈 서민들을 아랑곳 하지 않는 정치권에 태극기는 사형선고를 내렸다. 백번 천 번을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범죄도 확인되지 않았는데 국회는 탄핵을 가결하고 헌재는 이를 심의하고 있다. 이 위험한 작태를 그냥두면 대한민국의 헌법은 생명을 잃는다.

이 위험한 불장난을 묵과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깜깜한 지옥이 된다. 이들의 결론은 뭔가. 범죄가 있건 없건 탄핵으로 박 대통령을 끌어 내리겠다는 것이 아닌가.

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살인 혐의로 사형하고 난 뒤 범죄혐의를 찾고 있는 꼴과 뭐가 다른가.

이런 작태는 훗날 무죄가 나더라도 이미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뒤다.

그때 가서 울고불고 해봐야 죽은 자는 돌아오지 않는다. 이것과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박 대통령의 탄핵 밀어붙이기와 뭐가 다른가 말이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다. 무죄추정원칙이 우선이다. 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범죄자로 낙인찍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사람들이다. 그런데 탄핵소추안까지 수정하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하고도 전혀 뉘우침이 없다. 국회 가결이 원천무효며, 이를 받아 준 헌재는 역사 앞에 큰 죄를 저질렀다.

대통령을 두둔하고 말 것도 없다. 법으로만 따져보자. 먼저 대통령을 조사도 하지 않고 공범자라고 발표한 정치검찰은 피의자의 무죄주장 권리를 박탈했다.

입법기관인 국회 역시 대통령에게 소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이는 국회와 검찰이 법위에 군림해 대통령을 탄핵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세계적인 조롱거리다.

더 심각한 것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한 검찰청법과 특검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다.

현정사상 초유로 야당만 추천한 특검 후보를 임명하게 한 특검법도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한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 여당은 참정권까지 박탈당했다.

이처럼 법 위에 군림한 정치검찰 수사를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것도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제는 때가 늦었다.

애국으로 뭉친 태극기집회는 매 회마다 두 배 이상 늘어나고 있다. 서울뿐만 아니다. 전세계서 애국동포들이 태극기를 들고 탄핵무효를 외친다.

대도시에서 시작된 태극기 집회는 전국 시군구에서 탄핵기각의 함성을 전해온다.

이제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광란의 미친 짓을 끝내야 한다. 이제 헌법유린과 헌법파괴의 작태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그러하기에 태극기든 국민이 성취할 것이다.

망가진 대한민국의 국격과 나락으로 곤두박질 친 경제를 살려 낼 것이다.

태극기 든 국민이 반드시 이뤄 낼 것이다. 유린당한 헌법을 제자리로 돌리고, 만신창이가 된 민주주의에 애국의 생명을 불어 넣을 것이다.

우리의 이러한 애국심과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태극기의 숭고한 뜻을 알기에 2월 4일 대한문에는 무려 130만 명이라는 애국 국민들이 모였다.

장담 컨데 세계역사는 이날을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대한민국에 제2의 광복절이 일어났다' 고...

그렇다면 오는 11일 이후부터는 300만 태극기가 나부끼는 애국물결을 보여주자.

그래야만 비열한 인간들의 국가전복 음모에 제동을 걸 수 있다.

〈태극기집회 사회자 손상대〉

감사말씀

11일 태극기집회 한 편의 장엄한 드라마

또 다시 기적을 창출해주신 애국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초반부에 음향 사고는 있었지만, 오늘 태극기 집회는 한 편의 장엄한 드라마였습니다. 정말이지 1회 태극기 집회부터 지금까지의 집회 중에서 오늘은 말 그대로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심지어는 경찰도 지난 집회보다 최소 두 배는 더 나왔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2월 11일 토요일 집회에는 남대문을 넘어 갈 것이라고 말했더니 경찰은 "그러면 로마 교황님 방문 이후 최대가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150만. 이제 변곡점은 넘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이제 드디어 승기(勝機)를 잡았습니다. '승기(勝機)를 잡았다' 이 말의 뜻을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승기가 단순히 승리의 기회를 잡았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天時地理人和....

천시(天時) : 봄이 오고 있어, 애국 시민이 추위를 겁내지 않고 집회에 나올 수 있게 되었고

지리(地理) : 변방을 돌아 중원에 이르러, 애국성지 서울광장을 확보했고

인화(人和) : 정의와 진실에 목말라 울분에 절어 사기(士氣)가 하늘을 찌르니.... 이제 드디어 승기(勝機)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지금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어떤 승기(勝機)도 교만과 나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더욱 겸손과 열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가장 경계한 것은 '경거망동' 입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교만과 나태' 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작 12척의 전선...그러나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만은 이 기쁨을 함께 나눕시다.

고맙습니다. 애국동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애국동지 여러분, 조금만 더 힘냅시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애국동지 여러분, 고맙습니다.

〈탄기국 대변인 정광용〉

대한민국 국민들은 왜 태극기를 들었는가?

Why do we patriots protest while waving our national flag?

1. 미군철수와 한미동맹을 파탄 내려는 종 북 좌파들의 대한민국 공산화를 좌시하지 않겠다.
Because we must deter the leftist conspiracy to install communism in the South, to break up the alliance between the ROK and the USA, and to cause the complete withdrawal of US troops from the Republic of Korea.
2.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촛불선동세력들의 음모를 묵과할 수 없다.
Because we can no longer condone the liberal conspiracy of the candlelight vigil group that violates our constitution and threatens to destroy our democracy
3. 국회-언론-사법부가 한통속이 된 대한민국 전복책동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Because we must prevent our country from being overthrown, as the national assembly, the press, and the judicature intend.
4. 대통령 탄핵부터 가결하고 특검이 범죄를 찾는 엉터리 탄핵을 기각시켜야 한다
Because we cannot accept the wrongful impeachment of President Park Geun-hye, with a verdict that reached prior to the special prosecutors' investigation.
5. 대통령 탄핵을 빙자한 종북세력들의 적화음모를 확실히 차단해야한다
Because we must deter pro-North Korean sympathizers from their conspiracy to communize the South under the pretext of the unjustifiable presidential impeachment

2월18일(토) 제13차 탄핵무효 태극기 집회
25일은 대통령 취임 4주년, 국민총궐기의 날!
박근혜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 재판관님들의 올바른 판단을 기다립니다.
태극기를 손에 들고 오직 정의로운 기각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재판도....
더구나 역사적 심판을 날짜를 미리 정해놓고 하는 법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신속 보다는 공정 심판으로 정의와 진실을 밝혀 주십시오.
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오직 정의와 진실을 위하여...
나 하나의 참여가 역사를 바꿉니다.
가자, 시청 앞 대한문.
(1)태극기 뱃지와 (2)태극기 (3)태극기 스티커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자... 가자... 승리의 길을 가자.
일시: 2월 18일 (토) 오후 2시
장소: 서울시청 앞 대한문
지하철 1호선, 2호선 서울시청역 (어느 출구로 나와도 다 통합니다.)
주최/주관/참여: 탄기국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오직 여러분의 후원금으로만 이 기적이 가능해집니다.
십시일반 참여가 나라를 살립니다.
신한은행: 110-468-398553 예금주:정병현 (박사모)

주최/주관/참여 : 탄기국(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운동본부), 보수대연합, 대한민국 건국회, 대한민국 박사모, 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행동하는 양심 실천운동 본부, 서북청년단, 기독시민연대, 구미희망포럼, 무궁화회, 국민행복실천협의회, 대한민국 박대모, 대한민국 나사모, 영남향우회, 상주향우회, 나라사랑어머니연합, 정의행동, 구국300정의군결사대, 대한민국미래연합,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바른사회여성모임, 애국동지회, 역사바로알리기국민운동, 자유논객연합, 호국선양회, 부추연(부정부패추방시민운동), 박해모, 행복주는 글로벌 다문화, 목련회, 대한민국써포퍼즈. 박정희대통령육영수여사승모회, 중수산악회, 박정희대통령민족문화선양회, 박정희대통령정신문화선양회, 태극기선양운동중앙회, (사)박정희대통령과육영수여사를좋아하는사람들의모임, 미래리더스포럼, 나라(독도)사랑국민운동본부본부, 전국불교를지키는도반들, 국가안보정책연합, 대한민국새마음포럼, (사)새마을안전실천중앙회, 청자모, 국가안보정책연합, 대사모전국연합. 해병대전우전국종연맹, 육해공군해병대 대령연합회, (사)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한국기독교종교청협의회, 기독교발전협의회, 세계한인기독교총연합회, 대한기독교연합총회 ... (참여희망단체신청 : 〈탄기국/보수대연합〉 (임시) 간사 시농 010-2200-5877)

종북의 광기(狂氣) 문재인의 혁명?

정권탈취 체제전복 연방제통일, 국헌문란 내란 수괴는 사형
혁명론 종북반역세력 추구하는 민족해방인민민주혁명과 닮아

야권의 유력한 차기대권후보로 알려진 더불어 민주당 전 대표 문재인이 헌법절차에 따라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2016년 12월 14일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 밖에 없다'는 발언을 했다. 이는 마음에 안 드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면 폭력으로 법치파괴, 헌정중단, 정권탈취, 체제전복, 내란을 일으키겠다는 명백한 의사 표시인 동시에 대국민 협박과 현재에 탄핵 인용을 강요하는 범죄적 행태이다.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이 2007년 10.4 선언에 남북관계에서 급기시(燃眉級) 해온 3자회담 문구를 김정일 지시라서 뺄 수 없다고 했는가 하면, 같은 해 11월 18일 UN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직전에 김정일의 결재를 받아 기권결정을 했으며(송민순, 방하는 음지인다.) 대통령에 당선 되면, 주저 없이 미국보다 북한 먼저 갈 것!(2016.12.14.도올과 면담)이라고 하는 등 문재인의 사상 이념적 배경과 행태에 대한 갖가지 의문과 의혹(疑惑)이 일고 있어 이를 하나씩 짚어 봐야할 것이다.

혁명이라는 발언은 문재인 전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입에서도 나오고, 심지어는 촛불집회에 동원 된 초중고학생집에서도 여과 없이 나왔다. 추미애가 지켜보는 가운데 김갑수 입에서도 내란, 교전, 암살 "작살낼 놈 작살내자"는 등 무차별 살육과 유혈폭동을 의미하는 끔직한 주장이 봇물 터져 나오듯 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우상호 추미애 등 당지도부와 소속의원이 총 출동한 11월 5일, 11월 12일 등 민노총과 퇴진행동 촛불집회에 단두대(斷頭臺)와 효수목(梟首木), 사약(賜藥)패포먼스 등 끔직한 장면과 살인 구호가 난무하는 가운데, 사회주의혁명 피켓과 이석기 석방 구호가 등장했다는 사실 또한 우연으로 치부해서 안될 것이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경찰버스가 50여대나 파손되는 촛불폭력시위 현장에 조총련과 연계 된 일본공산당 JR 총련과 국내 중국인 유학생이 대대적으로 가세함으로서 이들의 주장과 요구가 순수한 '국민의 뜻' 이 아니라 민노총 지배와 전국연론노조 조종을 받는 종편 등의 의도적 오보와 왜곡날조 된 선전선동에 일시적으로 격앙된 '민심' 에 편승한 내란에 외세까지 끌어들인 매국적(賣國賊) 행태가 벌어졌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문재인도 우상호도 누가 왜 혁명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으키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밝힌 바는 없다.

다만 ①탄핵에 사활을 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과 우상호가 ②탄핵이 기각 됐을 때 ③탄핵요구세력을 규합 ④박대통령을 청와대에서 직접 끌어내리기 위해 ⑤(폭동소요용기반)된) 폭력혁명을 통한 ⑥정권탈취와 체제전복 내란을 거쳐서 문재인이 2012년 8월 18일 김대중 3주기 추도사에서 공개적으로 다짐한바 연방제를 실현하겠다는 뜻으로 유추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이 말한 혁명의 성격이나 수단 그리고 양상은 어떤 것이며, 혁명을 위한 준비 및 실행은 어디까지 왔을까? 문재인도 우상호도 미군철수, 국보법폐지, 안기부(국정원)폐지, 연방제통일을 입에 달고 살던 미전향 공안사범 출신이란 점을 감안한다면, 그들이 하겠다는 혁명은 북한이 주장하고 종북반역세력이 추구하는 민족해방인민민주혁명과 많이 닮았거나 같을 것이다.

먼저 북한 대남노선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종북 주사파란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세습독재자에게 절대충성 무조건복종 결사옹위를 맹세하고 김일성과 김정일을 혁명의 수호신으로 숭상하고 김정은을 정치적 생명을 준 정치사상적 어버이요 최고 존엄으로 받들며, 사상이념적으로 철저히 북에 종속(從屬)되고 조직에 맹종(盲從)하는 노예집단을 김일성 주체사상파=주사파(主思派)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남파간첩과 지하당, 불순서클을 통한 학습교양세뇌과정을 거쳐 사상성과 혁명성 계급성과 폭력성으로 무장된 사냥개,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로봇을 혁명의 주력군과 예비군, 이를 강화하는 데 청년학생과 종교인을 보조역량으로 편성, 합법투쟁/비합법투쟁, 비폭력투쟁/폭력투쟁, 경제투쟁/정치투쟁을 배합하여 정권탈취/체제전복을 위한 폭력투쟁 도구 겸 소모품으로 이용한 후 버림받는 것이 주사파이다.

소위 김일성교시와 노동당규약, 정치사전 철학사전 등을 중심으로 김정은 대남폭력적화 노선을 맹종 답습하고 있는 종북반역세력의 폭력혁명 실상을 살펴보자.

▶노동당 규약에 교묘히 위장 은폐된 공산혁명

1.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하여 파각히 투쟁한다.(1970.11.2)

2. 김일성이 창건한 주체형의 혁명적 맑스—레닌주의당이다.(1980.10.13)

3.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원칙을 견지한다.(2010.9.28)

4.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원칙을 견지한다.(2012.4.12)

※ 북한 살인폭압독재집단은 단 한순간도 공산혁명을 포기하지 않았다.

▶피의 혁명, 대량 살육(殺戮) 공포

지배계급(계급적원쑤)들로 하여금 공산주의혁명 앞에서 전율(戰慄)케 하라(공산당 선언)

▶혁명성

노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는 끝없는 헌신성, 원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과 증오심,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추호의 동요 없이 혁명의 지조를 지켜 끝까지 견결히 싸우는 혁명정신에서 표현된다고 학습세뇌 의식화 하였다.

▶민족해방인민민주혁명의 본질

1. 혁명의 동력 : 노동계급을 비롯한 농민과 진보적인 청년학생, 지식인, 소자산계급 등 광범한 반제민주역량과 양심적인 민족자본가와 종교인들이 혁명에 참가할 수 있다.

2. 혁명의 대상 : 제국주의자, 그와 결탁한 자주, 예속자본가, 민족반역자, 반동관료배

3. 혁명의 방도 : 유격전 형식의 무장투쟁을 기본으로 하면서 여기에 여러 가지 형태의 대중투쟁을 옳게 결합하는 것

▶폭력투쟁

노동계급은 착취계급의 권력기구를 뒤집어엎고 자기의 정치적 지배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에서 혁명적 폭력이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 폭력투쟁은 근로인민대중의 정권전취(政權戰取)를 위한 결정적 투쟁 형태이며 착취계급을 청산하기 위한 계급투쟁의 최고형태이다.

근로인민대중은 오직 폭력투쟁을 통해서만 반동적인 착취계급과 착취제도를 타도하고 국가주권을 장악할 수 있다.

물론 집회, 시위, 파업 등과 같은 비폭력투쟁도 혁명투쟁에서 일정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그것은 주권전취의 결정적 형태로는 되지 못한다.

▶혁명적 무장봉기

반혁명세력에 대한 혁명적 폭력의 중요한 수단의 하나이며 낡은 사회제도를 뒤집어엎고 인민대중의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결정적 투쟁의 한 형태이다.

▶무장투쟁

피착취, 피압박 인민들이 무장으로 착취계급과 제국주의침략자들의 반동적 독재기구를 뒤집어엎고 정권을 잡기 위하여 벌리는 가장 높은 형태의 계급투쟁. 민족해방투쟁에서 결정적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유격전을 기본형식으로 하는 무장투쟁을 적극 발전시키고 한편 혁명의 결정적시기에는 전 인민적 무장폭동을 결합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바 김일성이 교시하고 노동당이 정의해 놓은 폭동소요반란 봉기 내란 등 폭력혁명과 비근한 사례로 2013년 8월 28일 통진당 출신 이석기 주도의 지하혁명 조직 RO (Revolutionary Organization)가 대한민국 체제전복을 목적으로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른바 '남한 사회주의 혁명' 도모 하다가 발각된 사건을 예시할 수 있다.

노무현 정권 민정비서와 비서실장을 역임한 문재인이 이석기를 두 번이나 만나서 주고, 이석기 구속 후, 이석기 석방을 강력하게 요구했대서 '文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류인 친노 문재인과 우상호가 주장한 혁명이 이석기 類의 RO 혁명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하기도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여기에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문재인과 우상호가 '혁명'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이상 탄핵기각을 대비한 무기휴직은닉, 폭력투장 지휘부와 참모부 설치, 폭동소요봉기 전위부대의 조직편성 등 필수적인 혁명준비가 전혀 없다고 볼 수 는 없다는 점이며, 아니기를 바라면서도 각별히 유의해야 할 부분은 "남조선 애국력량의 요청이 있을 때" 전시사업세칙에 따라서 전시를 선포, 개입한다고 한 북한과 내통결탁여부이다.

당사자들의 자백이나 해명, 관계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이 주장한 '혁명' 에 대한 분석과 유추해석엔 한계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80년대 반체제운동권과 90년대 주사파의 정권탈취 체제전복 폭력혁명의 텍스트라고 할 수 있는 '김일성교시' 와 '정치사전', '전시사업세칙' 을 중심으로 살펴 본 바에 대하여 문재인과 우상호 등의 반론과 해명을 기대하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다. 〈백승목 대기자〉

[경 고]

허위사실 유포 용서치 않겠다
형사고소+민사소송 등 모든 법적 조치 돌입
지금은 전시라 어떤 용서도, 관용도 없을 것

제가 박사모를 만들게 된 계기는 노빠들과의 전쟁이었습니다. 2004년 탄핵정국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결국 일개 개인으로는 싸우는 것이 한계가 있다 싶어 모임을 만들 것을 기획했고, 때마침 2004년 3월 30일 밤 10시 30분 당시 한나라당 총선 지원유세에 나선 박근혜 대표님의 눈물을 보고 '박사모' 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를 두고 노사모 회장 출신이라느니, 노사모 출신이라는니 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들은 어떤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데 탄기국과 태극기 집회를 무력화하려는 목적 등, 타인을 음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는 더욱 큰 처벌을 받습니다.

물론 그러한 목적이 없어도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의 고향 후배로 각종 부패에 연루되었던 장광용은 저와 이름만 같은 사람(동명이인)으로 탄기국 대변인이고 박사모 회장인 저와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형사처벌 – 벌금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민사도 병행하여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엄하게 처벌하겠습니다.

그동안 참 많이 용서했지만 지금은 전시라 어떤 용서도, 관용도 없을 것입니다.

미리 경고합니다. 이미 이 사건은 전속 변호사님께 의뢰되었습니다. 형사처벌과 민사 손해배상까지 당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탄기국 대변인 장광용〉

'뇌물죄' 명확한 증거 없이 적용하기 어려워

이재만 변호사, 지난해 검찰, 특검 수사 보며 이미 진단
대통령 통치행위 소속된 정당 다음 선거서 심판이 원칙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앞두고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뇌물죄 등에 대해 법률 전문가인 법무법인 '청파' 의 이재만 대표변호사를 통해 현재 거론되고 있는 탄핵관련 각종 주장들에 대해 분석해본다. 〈편집자주〉

Q. 많은 국민들은 광화문 촛불시위를 보면서 이번 특검 및 헌재판결이 자칫 여론에 휩쓸려 오판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문들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의 이런 사회분위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예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회적 분위기가 마치 촛불 속에 모두 스며드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지만 법은 그렇게 휘둘리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과 여론은 민의 목소리일 뿐이지 헌법을 좌지우지할 요소는 아닙니다. 따라서 검찰을 통해 특검으로 넘어온 방대한 자료들을 특검팀이 세세하게 파악한 후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확정하고 그에 대하여 법적용 문제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 문제는 특검의 결정에 문제가 있거나 의혹이 남게 되면 큰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보수 측의 시위도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자칫하면 광장시위가 법과 정치를 능가함으로써 올지 못한 결과를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검의 수사결과는 언론에 나타난 여론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물적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을 한 후에 그것에 법을 적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Q. 먼저 뇌물죄 적용여부에 대해 변호사님 개인의 생각을 설명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A. 뇌물죄라는 용어는 국민들도 많이 알고 있는 범죄일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뇌물죄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뇌물죄는 수뢰죄(收賂罪)와 증뢰죄(贈賂罪)로 구성됩니다. 수뢰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 · 요구 ·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증뢰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에게 이를 공여하는 내용의 범죄입니다. 이때 '직무' 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위에 따라 담당하는 일체의 직무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종속적 지위에서 소관 이외의 사무를 일시 대리할 경우의 직무도 포함합니다. 뇌물죄의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 강도 높은 검찰수사에서도 박대통령을 뇌물죄가 아니라 제3자 뇌물제공죄의 공범으로만 보고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총수들로부터 직접 뇌물을 받은 것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찰은 박대통령이 재벌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였다는 것은 입증되었다고 본 듯합니다. 그러나 증거 없이는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이는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 뇌물죄이기 때문입니다.

Q. 그렇다면 검찰이 뇌물죄가 아닌 제3자 뇌물제공죄에 비중을 두는 것 같은데 이런 법조항을 대통령에 적용하기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 또한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과거 대통령들처럼 수천 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도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액수의 뇌물을 받았다면 탄핵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행위가 통치행위인 한 직무유기, 직권남용, 강요죄 등은 탄핵사유로 보기 어렵고, 상당한 액수의 뇌물죄가 증명되어야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여 지므로 탄핵심판에서 뇌물죄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박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받은 점에 대한 증명은 없지만 적어도 박대통령이 지배뇌물로 판제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 문제는 특검의 결정에 문제가 있거나 의혹이 남게 되면 큰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보수 측의 시위도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자칫하면 광장시위가 법과 정치를 능가함으로써 올지 못한 결과를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검의 수사결과는 언론에 나타난 여론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물적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을 한 후에 그것에 법을 적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Q. 먼저 뇌물죄 적용여부에 대해 변호사님 개인의 생각을 설명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A. 뇌물죄라는 용어는 국민들도 많이 알고 있는 범죄일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뇌물죄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뇌물죄는 수뢰죄(收賂罪)와 증뢰죄(贈賂罪)로 구성됩니다. 수뢰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 · 요구 ·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증뢰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에게 이를 공여하는 내용의 범죄입니다. 이때 '직무' 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위에 따라 담당하는 일체의 직무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종속적 지위에서 소관 이외의 사무를 일시 대리할 경우의 직무도 포함합니다. 뇌물죄의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 강도 높은 검찰수사에서도 박대통령을 뇌물죄가 아니라 제3자 뇌물제공죄의 공범으로만 보고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총수들로부터 직접 뇌물을 받은 것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찰은 박대통령이 재벌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였다는 것은 입증되었다고 본 듯합니다. 그러나 증거 없이는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이는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 뇌물죄이기 때문입니다.

Q. 그렇다면 검찰이 뇌물죄가 아닌 제3자 뇌물제공죄에 비중을 두는 것 같은데 이런 법조항을 대통령에 적용하기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 또한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과거 대통령들처럼 수천 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도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액수의 뇌물을 받았다면 탄핵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행위가 통치행위인 한 직무유기, 직권남용, 강요죄 등은 탄핵사유로 보기 어렵고, 상당한 액수의 뇌물죄가 증명되어야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여 지므로 탄핵심판에서 뇌물죄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박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받은 점에 대한 증명은 없지만 적어도 박대통령이 지배뇌물로 판제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 문제는 특검의 결정에 문제가 있거나 의혹이 남게 되면 큰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보수 측의 시위도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자칫하면 광장시위가 법과 정치를 능가함으로써 올지 못한 결과를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검의 수사결과는 언론에 나타난 여론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물적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을 한 후에 그것에 법을 적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Q. 먼저 뇌물죄 적용여부에 대해 변호사님 개인의 생각을 설명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A. 뇌물죄라는 용어는 국민들도 많이 알고 있는 범죄일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뇌물죄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뇌물죄는 수뢰죄(收賂罪)와 증뢰죄(贈賂罪)로 구성됩니다. 수뢰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 · 요구 ·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증뢰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에게 이를 공여하는 내용의 범죄입니다. 이때 '직무' 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위에 따라 담당하는 일체의 직무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종속적 지위에서 소관 이외의 사무를 일시 대리할 경우의 직무도 포함합니다. 뇌물죄의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 강도 높은 검찰수사에서도 박대통령을 뇌물죄가 아니라 제3자 뇌물제공죄의 공범으로만 보고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총수들로부터 직접 뇌물을 받은 것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찰은 박대통령이 재벌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였다는 것은 입증되었다고 본 듯합니다. 그러나 증거 없이는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이는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 뇌물죄이기 때문입니다.

Q. 박영수 특별검사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 대한 제3자 뇌물수수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병석 전 새누리당 의원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지난 9일 법원이 내린 판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전 의원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선고 공판에서 두 가지 핵심 혐의에 대해 각각 유죄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선고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A. 보도 내용을 보면 재판부는 포스코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이 전 의원이 측근 이모씨가 운영하는 S사가 4억 4000만원어치 원료납품권을 따내게 한 혐의는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반면 이 전 의원의 측근 한모씨의 E사가 4억 5000만원어치 청소용역 사업권을 포스코로부터 따낼 수 있도록 한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이 판결을 보면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되려면 뇌물을 주고받는 사이에 청탁과 대가에 대한 명백한 공통인식이 존재해야 한다는 게 판결 논지였습니다. 무죄를 받은 E사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제3자 뇌물수수죄에서 부정청탁이 묵시적인 형태일 경우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이익이 직무집행 대가라는 점을 공무원과 이익제공자가 공통으로 인식해야 한다"면서 "그런 인식이 없이 막연한 기대로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했다면 부정청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이런 판단은 이번 최순실 국정 농단 파문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정조사에서 "대가성은 없었다"는 재벌총수들의 증언이나 지금까지 보도된 검찰 수사 내용을 위와 같은 판결에 비추어 보면 제3자 뇌물제공죄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특검이 제3자뇌물제공죄의 완벽한 증거를 찾아낸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단 특검이 수사를 통해 사건 전모를 어떻게 입증하는지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Q. 박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의결 이후에도 야권과 촛불시위자들이 계속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수 측에서는 탄핵과 관련 법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나기 전까지 대통령이 하야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주장합니다.

A. 국회법 제134조 제2항은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지만,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없기 때문에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사임이 가능하고 대통령이 사임하면 현재는 심판의 대상이 없어졌으므로 탄핵심판이 중단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라고 하여서 일반 공무원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탄핵심판 중에 사임은 불가능하고 탄핵심판은 계속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규정의 불비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탄핵심판중에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하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탄핵심판 중에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적인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로써 헌법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므로 각 정파는 탄핵심판의 결과 나올 때까지 공정한 심리가 가능하도록 성난 촛불집회를 설득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 정파의 이익 여부를 떠나서 국가적으로 소탐대실의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타운 216년 12월15일 기사〉

"다 같이 손잡고 일어날 때다"
'탄핵을 탄핵한다' 저자 김평우 前대한변협 회장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허무맹랑한 범죄로 탄핵

진정한 愛國者(애국자)들이 모두 나와서 행동할 때이다. 나이 들은 나도 祖國(조국)에 돌아가 투쟁하려 한다. 칼심이 넘어 더 이상 바랄 것도, 잃을 것도, 무서울 것도 없다. 조국이 망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고만 있을 순 없지 않은가?!?

대한민국의 국민들, 특히 지도층이라고 자처하는 이들은 언론이 하찮은 최순실 게이트를 빌미로 하여 최순실에게 국정농단이라는 法無(법전)에도 없는 죄명을 뒤집어 씌워 마치 대한민국 역사 이래 없는 어마아마한 범죄가 터진 것처럼 사실 조작을 하였을 때 그 진위도 가려보지 않고 최순실 게이트의 책임을 물어 일찌감치 朴 대통령을 포기했다. 그래서, 이미 작년 11월경엔 朴 대통령의 인기가 5%로 추락하였다(지금은 알 마인지 모른다). 이 경솔한 변덕을 근거로 하여 언론과 야당은 朴 대통령의 下野를 주장하여 延(연) 몇백만 명이라는 시위대의 촛불 시위를 불러 일으켰던 것이다.

서울 중앙지검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언론보도만 가지고 공왕에서 최순실을 구속하고 번개불에 콩 볶는 졸속 수사를 하고는 수사결과 발표를 방자하여 피의자도 아닌 朴 대통령을 최순실 게이트의 피해자가 아니라 최순실 게이트의 주범으로 바꿔쳐서 수사의견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하는 세계 역사에 유례가 드문 司法造作(사법조작)을 저질렀다.

이 사법조작을 근거로 하여 국회가 朴 대통령을 700억~800억 공갈, 뇌물범이라는 역시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허무맹랑한 범죄로 탄핵하는 政變(정변) 즉 정치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공갈범이면 공갈범이고, 뇌물범이면 뇌물범이지 공갈, 뇌물범이라는 서로 모순되는 죄명이 세상에 어디 있으며, 대통령이라는 국가 최고 정책 결정자를 마치 무슨 하급 공무원처럼 공갈, 뇌물범으로 탄핵하는 국회가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인가!?

그러고도 모자라 지금 박영수 특검은, 원래 국회가 최순실의 국정농단 비리를 수사한다는 명분하에 만든 것이었으나, 이미 중앙지검이 최순실을 구속 기소하였고,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소추하였으므로 셀럽목적이 없어져 당연히 해체 내지 해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체나 해임되기는커녕 오히려 특검법에도 없는 블랙리스트 조사를 벌여 조윤선 장관 등 이나라 최고위 공무원들을 마구 구속하였다. 여기서 더 나아가 박영수 특검은 국회가 엄연히 탄핵소추장에서 朴 대통령의 공갈 혐의를 인정하여 구속하였다. 여기서 더 나아가 박영수 특검은 국회가 엄연히 탄핵소추장에서 朴 대통령의 공갈에 수백억의 돈을 뜯긴 피해자라고 발표한 삼성전자 회장에 대하여 공갈, 뇌물죄의 공범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기가 막힌 횡포를 부리고 있다(공갈 피해자를 구속영장 청구하는 검찰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인가?!).

영장 담당 법관도 이해가 안 가기는 마찬가지이다. 공갈 피해자라고 국회의 탄핵 소추장에 명시되어 있고, 더 나아가 최순실에 대한 서울 중앙지검 공소장에도 朴(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저지른 직권남용죄, 강요죄의 공갈 피해자라고 명시되어서 지금 惠敎(현재)와 형사법원에서 朴 대통령과 최순실 등이 직권 남용, 강요죄 즉 공갈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임을 분명히 알 터인데도 그 사건의 피해자를 영장청구하는 특검의 어이없는 영장청구를 기각하는 데 수십 시간의 고심이 왜 필요하단 말인가?(박영수 특검이 무서워 고심하는 쇼를 부렸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다른 꿍꿍이가 있어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그야말로 박영수 특검이 無所不爲(무소불위)의 위세를 부리며 미치 혁명검찰처럼 행세하여 온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2017년 1월 현재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땅에 1960년대 중국의 文化革命(문화혁명)이 재현되고 있다. 이상이 2016. 11.부터 2017. 1. 23.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12. 9. 탄핵 政變과정을 간략하게 그려본 진행과정표 즉 타임라인(Time Line)이다. 이렇게 볼 때 12. 9. 政變(정변)은 최순실의 국정농단이라는 허황된 언론의 범죄 조작이 단초(端初)이고, 朴 대통령을 탄핵으로 쫓아내서 早期(조기)선거를 시행하여 완벽한 좌파 정권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고, 박영수 특검의 수사 권력 횡포가 마무리 과정이다.

이제 남은 것은 헌법재판소의 판결뿐이다. 그런데, 이번 12. 9. 政變의 총 지휘자로 보이는 문재인이라는 사이비 민주 · 인권 변호사는 만일 현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민중혁명이 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이런 공포 분위기에서 과연 헌재 재판관들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을까? 국민의 70~80%가 불신하고 있다 한다. 누가 보아도 당연한 우려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신 못 차린 지도층들은 탄핵기각을 위한 투쟁이나 노력은커녕 여전히 朴 대통령의 무능 · 실책만 타령하며, 탄핵이 곧 현재에서 인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黃 대행이 유리하냐, 潘 총장이 유리하냐 하며 줄서기와 편 만들기에 본末하다. 모두 사전선거 운동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특검에 잡혀 들어갈 빌미 만드느라 여념이 없다.

이 나라 지도층에게는 더 이상 기대가 없다. 이제는 나라 사랑하는 진정한 애국자들이 모두 나와서 행동할 때이다. 모두들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궐기하자. 나이 들은 나도 조국에 돌아가 투쟁하려 한다. 칼심이 넘어 더 이상 바랄 것도, 잃을 것도, 무서울 것도 없다. 조국이 망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고만 있을 순 없지 않은가?!?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애국자 여러분! 法治, 愛國의 깃발 휘 펄럭 펄럭 휘날리며 대한민국을 지켜주소서!

정치특검 정치검찰 '인권유린 수사' 해체돼야
대통령 나체사진 전시해 인격 살인하는 국회 국민이 탄핵

양심이 마비된 세력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막다른 골목 벼랑 끝까지 집단자살을 하려고 합니까?

어떻게 세운 나라입니까? 식민지 기나긴 고통에서 해방시켜주신 하느님, 중국과 러시아의 사주를 받은 북한의 무력남침도 저지시켜준 하느님, 미국과 유엔을 도구로 나타를 지켜준 하느님, 하느님의 놀라운 축복을 배신의 끝이 어디겠습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들의 시체가 이 광야에 즐비하게 나뒹굴 것이라는 민수기의 준엄한 경고가 들리지 않습니까?

무신론자 6.25전범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따르면서 기간시설을 파괴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내란선동 한 이석기가 朴 박근혜 정권 정치탄압 희생양인 것처럼 대형 조형물을 만들어 거리행진을 한 촛불이 진정한 민심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사실상 선전포고한 반란입니다

세계 최악의 세습독재 북한의 노동신문이 남조선언론을 정의와 진리의 대변자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받다니 한국 언론은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을 조사도 하지 않고 대통령을 공범자라고 발표하는 정치검찰과 대통령을 처형할 단두대를 설치한 촛불, 북한으로부터 전인민항쟁이라고 극찬을 받는 촛불,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검찰청법과 특검법을 위반해 헌정사상 초유이자 세계민주국가에 유례가 없는 야당 추천 특검수사로 탄핵사유를 증명하려는 정치특검, 검찰과 특검의 가혹한 인권유린 수사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하느님의 인내심은 끝날 것입니다

정치특검 정치검찰 인권유린 수사는 해체되어야 하고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1월 7일 14일 21일 2월 4일 갈수록 촛불을 압도한 태극기 민심이 교회와 종교와 나라를 구할 것입니다 국회에서 버젓이 대통령 나체사진을 전시해 대통령을 인격 살인하는 국회를 국민이 탄핵합니다.

서석구 변호사(대통령 측 변호인)

우리 시대 예술, 그 타락과 블랙리스트
예술이여, 그대 지금 어디에 표류하고 방황하는가?
상상력 빈곤을 권력비판 빙자한 풍자라고 포장한 것

예술은 어떤 고매한 사상을 형상화하는 작업이다. 안톤 체홉의 '갈매기' 에 나오는 말이다. 니콜라이 하르트만은 '예술은 정신적 산물이며, 객관화된 정신의 특수한 형태' 라고 했다. 칸딘스키는 '예술은 느낌을 통해서 정신을 물질 속에 넣은 것' 이라고 했다. 인간과 예술에 대한 첨학적 사유이다.

언젠간 국립극장 무대에 논란